|  |  |  |
| --- | --- | --- |
|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인쇄발부에 대한 통지**  京人社工發 [2011] 378호  각 구, 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각 사용단위: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조례>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북경시 인민정부 령 2011년 제242호)에 근거하여 당 국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북경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2011년 12월 29일  첨부:  **북경시 산업재해 인정방법**  **제1조**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규율하여 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실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조례》, 《<산업재해조례> 시행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하《조례》,《약간규정》이라 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사용자와 그 종업원에 적용한다.  **제3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본 관할구내의 산업재해 인정업무를 관장한다. 산업재해 인정은 객관 공정하고 편의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을 준수하며 사고 피해를 입은 종업원의 권익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절차는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조례》 제1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요구하는 업무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식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잔업이나 연장근무를 하는 시간, 업무상의 필요로 인한 작업중도의 휴식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작업장소"는 종업원의 일상 작업장소 또는 리더가 임시로 배치한, 업무완성과 관련되는 장소에 따라 인식할 수 있으며, "사고 상해"에는 종업원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인신 상해와 급성 중독 등으로 초래된 사고 상해가 포함된다.  **제5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2)호 규정을 적용할 때 "예비성 작업"은 작업 전의 일정한 단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작업과 관련되는 준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은 작업이 끝난 후의 일정한 단계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작업과 관련되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6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3)호 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직책 수행 중에 폭력 등의 뜻밖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상해가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이 그 업무직책 수행 관리행위에 불복하여 폭력을 가한 생해에 속하며 아울러 당해 폭력상해가 업무직책의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종업원이 개인적 감정, 은혜와 원한 등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원인으로 인해 폭력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직책 수행으로 받은 상해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업원이 근무시간과 작업장소 내에서 업무직책을 수행하는 기간에 뜻밖의 요인으로 인해 인신 상해를 입은 경우, 예를 들면 지진, 공장구역에 불이 나거나 직장건물이 붕괴되거나 또는 단위의 기타 시설의 불안전으로 인해 초래된 상해 등은 《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직업병"은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진찰자격을 구비한 전문 의료기구에서 진찰해야 하며, 아울러 "직업병"으로 진단된 질병이 국가에서 규정한 직업병 목록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업무상 외근"은 종업원이 본 단위 외이지만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거나, 또는 소재지 외 혹은 경외에서 본직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상해"는 사고 상해, 폭력상해 및 기타 형식의 상해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9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4조 제(6)호 규정을 적용할 때 "교통사고"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서 발급한 도로교통사고 관련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과 관련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격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퇴근 도중"은 종업원의 출퇴근 목적, 길과 방향, 거리와 시간 등의 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종업원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단위와 거주지를 왕복하는 합리적인 노선의 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는 종업원이 정상 근무시간의 출퇴근 및 종업원의 연장근무 후의 출퇴근 도중이 포함된다. 거주지는 그 일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등을 포함하는 종업원의 생활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비 본인의 주요책임"에는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와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도시 레일교통, 여객 페리, 기차사고 등이 포함된다. 사고책임의 인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교통운수, 철도 등 부서나 사법기관, 그리고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조직이 발급한 관련 법률문서를 의거로 해야 한다.  **제1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를 심사할 때 법정격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통사고책임인정서 중에 이미 본인의 무책임, 본인의 부차적 책임 또는 동등한 책임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비 본인의 주요책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돌발 질병"은 종업원이 근무시간과 작업장소에서 급작스럽게 발병함과 아울러 상태가 안 좋아 직장에서 사망했거나, 또는 직장에서 직접 병원에 이송하여 구급처치를 받다가 48시간 내에 사망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48시간 내"란 의료기구의 최초 진단시간부터 종업원이 사망한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구의 최초 진단에는 구급차에서의 구급기록이 포함된다.  **제1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6조를 적용할 때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는 법정사유에 속하는 가는 공안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발급한 유효 법률문서에 의거해야 한다.  **제13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조례》 제1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취기준은 《차량운전기사 혈액, 호기알코올 함량 및 검사》(GB19522-2004)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구 등 유관단위에서 법에 따라 발급한 검사결론, 진단증명 등의 자료는 주취를 인정하는 의거로 될 수 있다.  **제14조** 종업원이 사고 상해가 발생했거나 직업병 퇴치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었을 경우 소속단위는 《조례》와 《약간규정》에서 규정한 신청시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교통사고, 실종, 업무상 외근기간에 뜻밖의 상해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분간 제때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승인을 얻고 신청시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장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자가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산업재해 인정시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사용자의 산업재해 신청시한 연장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시한 연장 동의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 사용자가 설립한 분지기구가 북경시에서 법에 따라 영업집조나 등기증서를 취득한 경우 그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분지기구는 그 영업집조 또는 등기증서에 기재된 주소지 소속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수속을 밟을 수 있다.  **제17조**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할 때 사용단위 또는 종업원 또는 그 근친족, 공회조직은 《산업재해 인정신청표》(1식 2부)를 작성하는 동시에 산재인정 또는 산재 간주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상해를 입은 종업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고 《조례》와 《약간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심사할 때 그 신청이 본 구, 현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심사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모든 서류를 관할권이 있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을 접수한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 이송을 접수한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당해 산업재해 인정신청이 본 부서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북경시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서면으로 관할 확정을 신청해야 하며, 스스로 다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문건이 완비하지 못하거나 진단증명서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와 《약간규정》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산재 종업원에게 일괄 고지하여 본 시의 3급 이상 자격을 구비한 산업재해의료기구에서 의료검사를 받고 관련 의료문건을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한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신청인이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신청 기한 내에 다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후 필요 시 종업원의 사고 상해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23조** 《조례》 제20조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을 중지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중지 상황이 소실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을 중지하는 시간은 산업재해 인정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4조** 《약간규정》 제12조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절차를 종료하는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를 송달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이 종료된 후 신청인은 법정기한 내에 산업재해 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기타 통합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나 관련 부서에 조사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은 조사 확인을 진행할 때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관련 단위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2) 정보 제공자의 비밀을 유지.  **제27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 업무직원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해야 한다.  **제28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의무가 명확한 사용단위와 산재 종업원의 반대의견이 없는 산업재해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와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에는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인정 전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29조**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용단위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상처를 입은 부위, 사고시간과 진찰시간 또는 직업병 명칭, 상처를 입은 경과와 조사 확인상황, 의료진단 결론  (4) 산업재해로 인정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하는 의거  (5) 인정결정에 불복 시에 행정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부서와 기한  (6) 산업재해 인정 또는 산업재해 간주 결정을 내린 시간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용단위의 전칭  (2) 종업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신분증번호  (3)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 불간주의 의거  (4) 인정결정에 불복 시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서와 기한  (5) 산업재해 불인정 또는 산업재해 불간주 결정을 내린 시간.  **제30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증명서 등 관련 의학문건에 근거하여 산업재해 인정 결정에 상처부위를 밝혀야 한다.  **제31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일 내에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를 상해를 입은 종업원이나 그 근친과 사용단위에 송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의 송달은 민사 법률의 송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산업재해 인정신청 불수리결정,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 산업재해 인정결정 또는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산업재해 종업원이 상해등급 감정을 받기 전에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에 상처부위가 누락되었다고 인정하여 진단증명서 등 관련 의학문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다면 상처부위에 대한 추가 감정을 진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산업재해 인정결정서》와 상처부위 추가감정 결정은 산업재해 종업원의 상해등급 감정을 진행하는 의거로 한다.  **제34조**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기타 질병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고 3급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산업재해의료기구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질병이 초래된 의료진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아직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중에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해 기타 질병이 초래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미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인정결정서》를 변경해야 한다.  **제35조** 산업재해 인정이 완료된 후 구, 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산업재해 인정 관련서류를 5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36조** 이 방법 중의 《산업재해 인정신청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 불수리결정서》, 《산업재해 인정 중지통지서》, 《산업재해 인정 종료결정서》, 《산업재해 인정결정서》, 《산업재해 불인정결정서》의 양식은 북경시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북경시 <산업재해 보험조례>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시정부 제242호 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北京市工伤认定**  **办法》的通知**  京人社工发﹝2011﹞378号    各区、县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各用人单位：  　 根据《北京市实施〈工伤保险条例〉若干规定》（北京市人民政府令2011年第242号），我局制定了《北京市工伤认定办法》,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附件：北京市工伤认定办法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二〇一一年十二月二十九日    附件：  **北京市工伤认定办法**  **第一条** 为规范工伤认定程序，依法进行工伤认定，维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工伤保险条例》、《北京市实施〈工伤保险条例〉若干规定》（以下简称《条例》、《若干规定》）等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本市行政区域内的用人单位及其职工。  **第三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本辖区内的工伤认定工作。工伤认定应当客观公正、简捷方便，遵循《条例》 规定的原则，注重保护遭受事故伤害职工的利益。  工伤认定程序应当向社会公开。  **第四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一）项规定时，“工作时间”应按照法律、法规的规定或者单位要求职工工作的时间进行把握。职工因工作需要而加班加点的时间、因工作需要的必要工间休息时间，也应视同为“工作时间”；“工作场所”可以按照职工日常工作所在的场所以及为完成领导临时指派的工作所涉及  的场所进行掌握。“事故伤害”包括职工在工作过程中发生的人身伤害或者急性中毒等引起的事故伤害。  **第五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二）项规定时，“预备性工作”应理解为在工作前的一段合理时间内，从事与工作有关的准备工作。“收尾性工作”应理解为在工作结束后的一段合理时间内，从事与工作有关的收尾工作。  **第六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三）项规定时，“因履行工作职责受到暴力等意外伤害的”，应当考虑该伤害属于职工在工作中因他人不服从其履行工作职责的管理行为而受到暴力侵害造成伤害，且该暴力伤害与履行工作职责具有因果关系。职工因情感、恩怨等与履行工作无关原因遭受暴力侵害的，可考虑不属于因履行工作职责受到的伤害。  职工在工作时间和工作场所内，履行工作职责期间因意外因素导致的人身伤害，诸如地震、厂区失火、车间房屋倒塌以及由于单位其他设施不安全而造成的伤害等，也可以考虑适用《条例》第十四条第（三）项规定。  **第七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四）项规定时，“职业病”应按照《职业病防治法》的规定，由具有诊断资格的专门医疗机构进行诊断，且经诊断为“职业病”的疾病符合国家规定的职业病目录。  **第八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五）项规定时，“因工外出”应考虑职工到本单位以外但不出当地范围以及到当地以外或者境外从事与本职工作有关的工作等两种情形。“受到伤害”应考虑事故伤害、暴力伤害以及其他形式的伤害等情形。  **第九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四条第（六）项规定时，“交通事故”应按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规定理解。申请人提交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出具的道路交通事故相关文书应符合《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及相关法规规章规定的格式。  “上下班途中”应考虑职工上下班目的、路途方向、距离远近及时间等合理因素进行综合判断职工合理时间内往返于工作单位和居住地的合理路线的途中，包括职工按正常工作时间上下班以及职工加班加点后上下班的途中。居住地应当考虑职工的生活常态，包括其经常居住地、实际居住地等。  “非本人主要责任”包括非本人主要责任的交通事故和非本人主要责任的城市轨道交通、客运轮渡、火车事故。事故责任认定应以公安机关交通管理、交通运输、铁道等部门或者司法机关，以及法律、法规授权组织出具的相关法律文书为依据。  **第十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审核申请人提交的交通事故责任认定书时发现不符合法定格式的，可以要求申请人重新提供。交通事故责任认定书中已经作出明确的本人无责任、本人负次要责任或同等责任结论的，可视为“非本人主要责任”。  **第十一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五条第一款第（一）项规定时，“突发疾病”应考虑职工在工作时间和工作岗位上突然发病，且情况紧急，在工作岗位上死亡或者从工作岗位上直接送往医院抢救并在48小时内死亡的情形。“48小时之内”是指从医疗机构的初次诊断的时间到职工死亡时间不超过48小时。医疗机构的初次诊断包括在急救车中的急救记录。  **第十二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六条时，是否属于不予认定工伤或者视同工伤的法定事由，应当依据公安机关或者司法机关作出的有效法律文书为依据。  **第十三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适用《条例》第十六条第（二）项规定时，醉酒的标准按照《车辆驾驶人员血液、呼气酒精含量阈值与检验》（GB19522-2004）执行。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医疗机构等有关单位依法出具的检测结论、诊断证明等材料，可以作为认定醉酒的依据。  **第十四条** 职工发生事故伤害或者按照职业病防治法规定被诊断、鉴定为职业病，所在单位应当按照《条例》和《若干规定》明确的申请时限提出工伤认定申请。因遇有交通事故、失踪、因工外出期间发生意外伤害等特殊情况，暂时不能按时申请的，经报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同意，申请时限可以适当延长，但最长不能超过事故发生之日起一年。  **第十五条** 用人单位向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申请延长工伤认定申请时限的，应提交书面申请。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同意用人单位延长工伤认定申请时限的，应出具《同意延长工伤认定申请时限通知书》。  **第十六条** 用人单位设立的分支机构，在本市依法取得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的，与之签订劳动合同的职工发生工伤后，分支机构可以在其营业执照或者登记证书载明的住所地所属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办理工伤认定手续。  **第十七条** 提出工伤认定申请，用人单位或者职工及其近亲属、工会组织应当填写《工伤认定申请表》（一式两份），并注明要求认定或者视同为工伤。同时提供受伤害职工的身份证明并按照《条例》和《若干规定》的规定分别提交相关材料。  **第十八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审核工伤认定申请时，认为该申请不属于本区、县管辖的，应当自审核工伤认定申请之日起3日内将全部申请材料移送有管辖权的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受移送的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受理。受移送的社会保险行政部门认为该工伤认定申请不属于本部门管辖的，应当自收到工伤认定申请之日向市社会保险行政部门书面提出确定管辖申请，不得再自行移送。  **第十九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在审查工伤认定申请时，认为申请人提供的医学文件不完整或者诊断证明书不明确的，可按照《条例》和《若干规定》的规定，一次性书面告知受伤职工到本市具有三级以上资质的工伤医疗机构进行医疗检查，补正相关医疗文件。  **第二十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不予受理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5个工作日内向申请人送达《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  **第二十一条** 申请人撤回工伤认定申请的，在《条例》规定的申请时限内再次提出工伤认定申请的，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按照本办法规定的程序办理。  **第二十二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可根据需要对职工事故伤害和申请人提供的证据进行调查核实。  **第二十三条** 按照《条例》第二十条中止工伤认定的，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向申请人送达《工伤认定中止通知书》。中止情形消失的，应当恢复工伤认定程序。中止工伤认定的时间不计入工伤认定期限。  **第二十四条** 按照《若干规定》第十二条终止工伤认定程序的，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向申请人送达《工伤认定终止决定书》。工伤认定被终止的，申请人在法定时限内，有权再次提出工伤认定申请。  **第二十五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受理工伤认定申请后，可以根据工作需要，委托其他统筹地区的社会保险行政部门或相关部门进行调查核实。  **第二十六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进行调查核实时，应当履行下列义务：  　　（一）保守有关单位商业秘密及个人隐私；  　　（二）为提供情况的有关人员保密。  **第二十七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工作人员与工伤认定申请人有利害关系的，应当回避。  **第二十八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自受理工伤认定申请之日起60日内作出工伤认定结论。  对于申请材料完整，事实清楚、权利义务明确，用人单位和受伤职工无争议的工伤认定申请，应当自受理之日起15日内作出工伤认定结论。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工伤认定结论，应当制作《工伤认定决定书》或者《不予工伤认定决定书》。《认定工伤决定书》和《不予工伤认定决定书》应加盖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工伤认定专用印章。  **第二十九条** 《工伤认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用人单位全称；  　　（二）职工的姓名、性别、年龄、职业、身份证号码；  　　（三）受伤害部位、事故时间和诊治时间或职业病名称、伤害经过和核实情况、医疗诊断结论；  　　（四）认定工伤或者视同工伤的依据；  　　（五）不服认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的部门和时限；  　　（六）作出认定工伤或者视同工伤决定的时间。  　　《不予工伤认定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用人单位全称；  　　（二）职工的姓名、性别、年龄、职业、身份证号码；  　　（三）不予认定工伤或者不视同工伤的依据；  　　（四）不服认定决定申请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的部门和时限；  （五）作出不予认定工伤或者不视同工伤决定的时间。  **第三十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根据申请人提供的诊断证明书等相关医学文件，在工伤认定决定中明确伤害部位。  **第三十一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当自作出工伤认定结论之日起20日内，将《认定工伤决定书》或者《不予认定工伤决定书》送达受伤职工或其近亲属和用人单位，并抄送社会保险经办机构。  《工伤认定决定书》或者《不予工伤认定决定书》、《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工伤认定中止通知书》、《工伤认定终止决定书》的送达按照民事法律有关送达的规定执行。  **第三十二条** 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终止工伤认定决定以及工伤认定决定或者不予工伤认定决定的，应当告知申请人享有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权利。  **第三十三条** 工伤职工在进行伤残等级鉴定前，认为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的《工伤认定决定书》遗漏了受伤部位，在提交诊断证明书等相关医学文件后，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审核无误，可做出增补受伤部位的决定。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已经作出的《工伤认定决定书》和增补受伤部位的决定，一并作为工伤职工进行伤残等级鉴定的依据。  **第三十四条** 工伤职工认为因工伤或者职业病直接导致其他疾病的，并提交了具有三级以上资质的工伤医疗机构出具的工伤或者职业病直接导致疾病的医疗诊断证明。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未作出《工伤认定决定书》的，应在《工伤认定决定书》中对因工伤或者职业病直接导致其他疾病的情形予以明确。已经作出《工伤认定决定书》的，应当对《工伤认定决定书》进行变更。  **第三十五条** 工伤认定结束后，区、县社会保险行政部门应将工伤认定的有关资料保存50年。  **第三十六条** 本办法中的《工伤认定申请表》、《工伤认定申请受理决定书》、《工伤认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工伤认定中止通知书》、《工伤认定终止决定书》、《工伤认定决定书》、《不予工伤认定决定书》的样式由市社会保险行政部门统一制定。  **第三十七条** 本办法自《北京市实施〈工伤保险条例〉若干规定》（市政府第242号令）公布之日起施行。 |